



2022년 한부모가족 주거자금 소액대출사업

나는 가장이다



대출내용

- 대출금액 : 1세대 당 최대 5백만원, **상향 조정된 보증금 차액만큼 대출 가능**
(단, 신용 회복 중인 성실상환 2년 이상 경과 세대는 최대 3백만원)
- 대출금리 : 무이자
- 대출용도 : 임차보증금
- 대출조건 : 일정 기한 내에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야 함

예시

- ① 기존 보증금 5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75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7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대출 가능금액 : 250만원)
- ② 기존 보증금 20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이 8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800만원 - 200만원 = 600만원 (→ 대출 가능금액 : 500만원 / 본인 부담금액 100만원)
- ③ 임대주택 : 보증금 5,000만원(본인부담금 250만원)에서 신규 또는 재계약하여 보증금 8,000만원(본인부담금 400만원)으로 상향된 경우
: 400만원 - 250만원 = 150만원 (→ 대출 가능금액 : 150만원)

- **상환방법 및 금액** : 거치기간 없이 대출 받은 다음 달부터 가장 60개월 분할 상환
 - 300만원 이하 대출 : 매월 5만원 분할 상환
 - 300만원 초과 ~ 350만원 이하 대출 : 매월 6만원 분할 상환
 - 350만원 초과 ~ 400만원 이하 대출 : 매월 7만원 분할 상환
 - 400만원 초과 ~ 450만원 이하 대출 : 매월 8만원 분할 상환
 - 450만원 초과 ~ 500만원 이하 대출 : 매월 9만원 분할 상환
- ※ 심사를 통해 선정되며, 탈락자가 발생할 수 있음



신청대상

아래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부모가족(조손가족포함)의 가장

- 1 만 18세(취학 시 만 22세)이하 자녀를 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

2 임차보증금 보유기준

-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9,000만원 이하
- 광역시 7,000만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6,000만원 이하

〈2022년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비고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60,085	114,816	103,218	115,672	장기요양 보험료 미포함
3인	4,194,701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8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4,515	212,712	229,170	216,279	

※ 가구원수 : 주민등록등본에 등록된 세대원수 (단위: 원)
만 18세 이하 : 2004.1.1. 이후 출생자 (취학자녀 : 2000.1.1. 이후 출생자)



대출불가세대

아래 내용 중 1가지라도 포함 될 경우 대출 신청 불가

- ① 세대주 및 세대원 중 부동산 소유자
- ② 청소년한부모 중 미성년자 (민법상 대출 불가)
- ③ 가족(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④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 ⑤ 민간단체로부터 이미 임차자금을 무상 지원 받은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⑥ 신용관리 대상자 (개인회생, 파산)

* 단, 신용회복중인 세대는 상기 공통기준과 아래의 두 조건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 별도 심사를 통해 대출 가능

- ①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채무 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개인별 신청일자 기준)성실 상환중인 자
(신용회복위원회 외 채무조정제도 이용자 제외)
- ②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 신청 전 총 부채가 3천만원 이하인 자



사업일정

구분		2022년 일정		
		1차	2차	3차
대출 조건	신규/재계약 기간	2021년 11월 1일 ~ 2022년 5월 17일	2022년 1월 1일 ~ 2022년 8월 9일	2022년 6월 1일 ~ 2022년 11월 1일
신청서류접수		3월 28일(월) ~ 4월 11일(월)	6월 7일(화) ~ 6월 24일(금)	8월 29일(월) ~ 9월 16일(금)
최종심사대상자 발표		4월 28일(목)	7월 14일(목)	10월 6일(목)
약정서류 접수		일정 및 내용은 최종심사대상자 발표시 홈페이지 및 신청기관을 통해 공지 예정 (※ 최종심사대상자로 선정 후, 대출약정서류를 제출해야 대출 진행이 가능함)		
대출금 입금		5월 중	8월 중	11월 중

※ 세부 사업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될 시 홈페이지에 공지)



접수방법/제출서류

접수방법 지자체 또는 복지기관 및 단체를 통해 신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원본) 일체를 첨부하여 우편 제출

접수처 (06904) 서울특별시 동작구 현충로 75, 원불교소태산기념관 4층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제출서류

구분	구비서류		비고
필수서류	신청기관	• 서식1. 신청기관 신청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신청자	• 서식2. 대상자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홈페이지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주민센터, 인터넷
		• 현재 거주지 임차계약서 사본 - 시설거주자 : 시설입소확인서로 대체 - 무상거주 : 주민등록초본 및 사용대차확인서 - 신규 또는 재계약을 완료한 상태에서 대출신청시 : 신·구 계약서 사본 각 1부	
		소득증빙서류 (해당분야 제출)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수급자 (50%이하) • 수급자 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각 1부 기준 중위소득 50%초과~52%이하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기준 중위소득 52%초과~100%이하 • (2021년)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 급여 원천징수부
해당자	심사평가시 가점부여	• 장애인증명서(1~3급) 1부	주민센터, 인터넷
	신용회복 대상자	• 채무변제 상환내역 확인서	신용회복위원회

※ 신청 서식은 본 센터 홈페이지(www.seoulhanbumo.or.kr)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가능함

- 유의사항**
- 제출서류가 미비한 경우 대출신청 접수가 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 접수일자 마감일 등기우편 도착분만 유효(접수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인정되지 않음)

문의 방법

서울특별시한부모가족지원센터
주거지원사업 담당자 T. 02-861-3011

※ 문의가 많아 통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홈페이지 공지사항 내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